**신구 대조표**

|  |  |  |
| --- | --- | --- |
| **현행** | **개정** | **비고** |
| **로만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혼합]** | **로만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  |
| **제2조(용어의 정의)**  **6.“증권형”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을 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7. “채권혼합형”이라 함은 자산총액 중 주식 및 주식관련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최고편입한도가 50%미만인 상품을 말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6.“증권형”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을 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7. “채권혼합형”이라 함은 자산총액 중 주식 및 주식관련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최고편입한도가 50%미만인 상품을 말한다.~~**  **6.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이라 함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대상자산의 비율에 관한 제한이 없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 **\* 본 조의 이 외 각 호 번호 수정, 내용 동일** |
| **제2조(용어의 정의)**  **1. “예탁결제원”이라 함은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을 말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1. “한국예탁결제원”이라 함은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을 말한다.** | **\* 용어를 명확하게 수정**  **(참고: 제14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
|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투자신탁**  **2. 증권형 (채권혼합)**  **3. 개방형**  **4. 추가형**  **5. 사모형**  **6.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투자신탁**  **~~2. 증권형 (채권혼합)~~**  **2.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3. 개방형**  **4. 추가형**  **5. 사모형**  **6.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 펀드종류 변경 채권혼합형 🡪 혼합자산형** |
| **제6조(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좌당 1원을 기준으로 제30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 좌수는 1조좌로 한다.** | **제6조(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좌당 1원을 기준으로 제 28조에서 ~~제30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 좌수는 1조좌로 한다.** | **\*오류 정정** |
| **제17조(투자대상자산)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등(이하 “채권”이라 한다)**  **2.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 목적으로 하고 모집을 통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법인(이하 “기업인수목적회사”라 한다)이 발행한 주권을 포함한다](이하 "주식”이라 한다)**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 (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5.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6.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7. 환매조건부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음)**  **8.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9. 증권의 차입**  **10.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 **제17조(투자대상자산)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등(이하 “채권”이라 한다)**  **2.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 목적으로 하고 모집을 통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법인(이하 “기업인수목적회사”라 한다)이 발행한 주권을 포함한다](이하 "주식”이라 한다)**  **3. 법 시행령 제 11조제2항에서 규정한 코넥스 상장주식(이하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  **4.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5. 법 시행령 제240조 제4항 제5호 및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제 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었던 자로서 청산절차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채권자인 금전채권(부동산을 담보로 한 경우만 해당한다.)이 유동화자산의 50% 이상인 법인이 발행한 유동화 증권.**  **6. 법 시행령 제240조 제4항 제5호 및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제 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었던 자로서 청산절차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채권자인 금전채권(부동산을 담보로 한 경우만 해당한다.)이 유동화자산의 50% 미만인 법인이 발행한 유동화 증권.**  **7. 본 항 제 4호 내지 5호 이외에 법 제229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  **8. 본 조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한 채권 조정에 따라 채권 및 어음 등의 채권 회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지분증권인 주식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을 취득할 수 있다.**  **9. 법 시행령 제 240조제5항에 의한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10. 민법 제598조에 따른 소비대차에 해당하는 금전 대여. (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집합투자재산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차주는 개인이어서는 아니되며, 차주의 목적이 국내외 특별자산의 추득, 신설, 증설, 개량 또는 운영 등과 이에 준하는 사업인 경우에 한한다.)**  **11.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 (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12. ~~5.~~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13. ~~6.~~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14. ~~7.~~ 환매조건부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음)**  **15. ~~8.~~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16. ~~9.~~ 증권의 차입**  **17. ~~10.~~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부동산개발법인에 대한 대출.** | **\* 기존 투자대상 자산 외 코넥스 상장주식, NPL,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 금전대여를 가능 투자대상으로 확대** |
|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으로 한다.**  **2.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미만으로 한다.**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이하로 한다. 다만,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이하로 한다.**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제1호 내지 제4호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100분의 50이하로 한다.** |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본 투자신탁은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로써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그 취득한도에 제한이 없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으로 한다.~~**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미만으로 한다.~~**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이하로 한다. 다만,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이하로 한다.~~**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제1호 내지 제4호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100분의 50이하로 한다.~~** | **\* 펀드의 형태를 채권혼합형에서 혼합자산형으로 변경하면서 투자대상의 취득한도 변경** |
|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2. 제 3조의 2와 법 시행령 제271조제2항1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이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가.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그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나.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채무보증액 또는 담보목적물의 가액**  **다.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 |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2. 제 3조의 2와 법 시행령 제271조제2항1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이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가.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그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나.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채무보증액 또는 담보목적물의 가액**  **다.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  **라. 투자신탁재산으로 타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그 수익증권 취득분의 평가 총액.** | **\* 당 투자신탁에서 타 펀드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취득분의 평가총액의 한도를 당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 **제36조의2 (성과보수)**  **③ 성과보수는 수익자 계좌별로 그 수익증권 보유기간의 성과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2. 성과보수 금액 및 계산방법**  **가. 성과보수 금액 : Max[초과수익금액⑴ \* 성과보수율⑵, 0]**  **나. 계산방법**   |  |  | | --- | --- | | **(6) Hurdle rate** | **7%** | | **제36조의2 (성과보수)**  **③ 성과보수는 수익자 계좌별로 그 수익증권 보유기간의 성과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2. 성과보수 금액 및 계산방법**  **가. 성과보수 금액 : Max[초과수익금액⑴ \* 성과보수율⑵, 0]**  **나. 계산방법**   |  |  | | --- | --- | | **(6) Hurdle rate** | **5% ~~7%~~** | | **\* 당 투자신탁의 성과수수료의 Hurdle rate를 7%에서**  **5%로 변경** |
|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6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6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